

[변경대비표]

1. 펀드명 : 타임폴리오 TIMEFOLIO 미국나스닥100액티브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파생형)
2. 작성기준일 : 2022.09.23
3. 정정사항 : - 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정정
 -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4. 정정사유 : 당사 ETF 판매 채널 다각화를 위한 파생상품위험평가액 (실제 운용) 한도 축소 (40% -> 20%)
5. 효력발생일 : 2022.10.07

<신탁계약서>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제 16 조(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장내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 한도 축소	3. 장내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은 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의 40% 이하 로 한다.	3. 장내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은 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의 20% 이하 로 한다.
제 21 조(운용행위 감시 의무 등)	법 개정사항 반영	⑤ 신탁업자는 제1항에 따른 요구를 하거나 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제4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 에 대하여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 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신탁업자는 제1항에 따른 요구를 하거나 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제4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 집합투자업자로부터 법 제184조제6항의 업무를 위탁 받은 일반사무관리회사 에 대하여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 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⑥ 수익자는 <생략> 본다. 1. 수익자에게 신탁계약서에 기재된 간주의결권행사의 방법에 따라 집합투자규약에 기재된 내용을 서면, 전화·전신·팩스,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의결권 행사에 관한 통지가 있었으나 의결권이 행사되지 아니하였을 것	⑥ 수익자는 <생략> 본다. 1. 수익자에게 신탁계약서에 기재된 간주의결권행사의 방법에 따라 신탁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을 서면, 전화·전신·팩스,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의결권 행사에 관한 통지가 있었으나 의결권이 행사되지 아니하였을 것
제 35 조(반대수익자의 매수청구권)	용어 통일 (집합투자규약→신탁계약서)	③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매수청구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신탁 재산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매수청구기간의 종료일에 환매 청구한 것으로 보아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하 생략>	③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매수청구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신탁 재산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매수청구기간의 종료일에 환매 청구한 것으로 보아 신탁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하 생략>
제 45 조(공시 및 보고서 등)	법 개정사항 반영	②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제3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2.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추가>	②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제3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2.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법 제230조에 따른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의 만기를 변경하거나 만기상환을 거부하기로 결정 및 그 사유를 포함한다)

<투자설명서>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요약정보															
운용전문인력	업데이트	-	기준일자에 따른 업데이트												
	주식 상세 설명 정정	(주 4)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성과이며,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해당 회사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 또한 동일 유형으로 분류한 집합투자기구 중 운용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미포함, 6개월 이상 1년 미만인 경우 해당 기간 수익률을 연간 수익률로 환산하여 평균운용성과가 계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 4)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성과이며,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해당 회사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당사 공모펀드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운용 펀드 기준으로 보수차감 전 수익률이며 모자형 구조의 펀드의 경우 모펀드만을 대상으로 계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업데이트	-	기준일자에 따른 업데이트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가. 운용전문인력	업데이트	-	기준일자에 따른 업데이트												
	주식 상세 설명 정정	(주 4)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성과이며,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해당 회사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 또한 동일 유형으로 분류한 집합투자기구 중 운용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미포함, 6개월 이상 1년 미만인 경우 해당 기간 수익률을 연간 수익률로 환산하여 평균운용성과가 계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 4)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성과이며,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해당 회사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당사 공모펀드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운용 펀드 기준으로 보수차감 전 수익률이며 모자형 구조의 펀드의 경우 모펀드만을 대상으로 계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투자대상 (1) 이 투자신탁의 투자대상	<table border="1"> <thead> <tr> <th></th> <th>투자대상</th> <th>투자비율</th> </tr> </thead> <tbody> <tr> <td>⑥</td> <td>장내파생 상품</td> <td>위험평가액 기준 자산총액의 40% 이하</td> </tr> </tbody> </table>		투자대상	투자비율	⑥	장내파생 상품	위험평가액 기준 자산총액의 40% 이하	<table border="1"> <thead> <tr> <th></th> <th>투자대상</th> <th>투자비율</th> </tr> </thead> <tbody> <tr> <td>⑥</td> <td>장내파생 상품</td> <td>위험평가액 기준 자산총액의 20% 이하</td> </tr> </tbody> </table>		투자대상	투자비율	⑥	장내파생 상품	위험평가액 기준 자산총액의 20% 이하
	투자대상	투자비율													
⑥	장내파생 상품	위험평가액 기준 자산총액의 40% 이하													
	투자대상	투자비율													
⑥	장내파생 상품	위험평가액 기준 자산총액의 20% 이하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주 1) 정정	주 1) 기타비용은 증권의 예탁 및 결제비용 등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기타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기타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투자신탁은 작성기준일 현재 설정되지 아니하였으며, 이 투자신탁과 운용방법이 유사한 다른 투자신탁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기타비용 비율을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주 1) 기타비용은 증권의 예탁 및 결제비용 등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증권거래비용 및 금융 비용 제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작성 기준일까지의 회계기간이 6 개월 이상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기타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작성 기준일까지의 회계기간이 6 개월 이상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반기 말 회계연도의 기타비용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직전 회계연도 :] ※ 기타비용 종류: 채권평가보수, 펀드평가보수, 펀드결제수수료, 지수사용료, 감사보수, 기타위탁보수(보관대리인보수, 지급대리인보수), 대차거래비용(대차관련수수료), repo 거래비용(repo 수수료), 기타비용(해외거래예탁비용, 해외원천납부세액) 등												

			<table border="1"> <tr> <th>구분</th> <th>금액(직전 회계 기간 중 발생내역, 단위: 원)</th> </tr> <tr> <td>-</td> <td>-</td> </tr> </table>	구분	금액(직전 회계 기간 중 발생내역, 단위: 원)	-	-
구분	금액(직전 회계 기간 중 발생내역, 단위: 원)						
-	-						
주 2) 정정	주 2) 증권거래비용은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p>주 2) 증권거래비용은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작성 기준일까지의 회계기간이 6 개월 이상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기타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작성 기준일까지의 회계기간이 6 개월 이상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반기 말 회계연도의 기타비용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p> <p>※ 증권거래비용 종류 국내자산: 상장 또는 등록주식 매매수수료, 장내파생상품 매매수수료, 장외 ELW/ELS 거래수수료, 현금 중개수수료, 대차 또는 대주, Repo 거래 중개수수료 등</p> <p>해외자산: 주식, 채권, 선물, 장외파생, 기타 Forward 매매수수료 등 [직전 회계연도 :]</p> <table border="1"> <tr> <th>구분</th> <th>금액(직전 회계 기간 중 발생내역, 단위: 원)</th> </tr> <tr> <td>-</td> <td>-</td> </tr> </table>	구분	금액(직전 회계 기간 중 발생내역, 단위: 원)	-	-	
구분	금액(직전 회계 기간 중 발생내역, 단위: 원)						
-	-						
주 3) 추가	-	<p>주 3) 금융비용은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금융비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계산이 가능한 금융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투자신탁이거나 설정일로부터 1 년이 경과하지 않은 투자신탁인 경우 금액 산출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직전 회계연도:]</p> <table border="1"> <tr> <th>구분</th> <th>금액(직전 회계 기간 중 발생내역, 단위: 원)</th> </tr> <tr> <td>-</td> <td>-</td> </tr> </table>	구분	금액(직전 회계 기간 중 발생내역, 단위: 원)	-	-	
구분	금액(직전 회계 기간 중 발생내역, 단위: 원)						
-	-						
제 3 부.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다. 집합투자기구의 자산구성 현황	업데이트	-	기준일자에 따른 업데이트				

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업데이트	-	기준일자에 따른 업데이트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신탁업자) 나. 주요업무	법 개정사항 반영	-	- 집합투자재산 명세서와 신탁업자가 보관·관리 중인 투자신탁재산의 내역이 일치여부 확인
		③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의 확인사항 -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의 확인사항 -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법시행령 제 269 조 제 4 항에서 정하는 사항
3. 기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일반사무관리회사 가. 회사의 개요	사명 변경으로 인한 변경	㈜미래에셋펀드서비스	한국펀드파트너스
제 5 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나. 수시공시 (2) 수시공시	법 개정사항 반영	②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②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법 제 230 조에 따른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의 만기를 변경하거나 만기상환을 거부하는 결정 및 그 사유를 포함한다)